



서울대학교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 면제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

- 관련: 법무부 체류관리과 「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」
국제협력과-6028 (2022.7.15.) 「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신청(수익적 연구과제 참여 포함) 시 유의사항 안내」
-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면제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유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학위과정 유학생(D-2-5 제외)의 학업과 연관된 소속대학 내 수익적 연구 또는 인턴 활동은 시간제 취업 허가 면제

1) (소속대학 내 연구·인턴 활동) 대학 및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,

가) 학업과 연계된 연구/인턴 참여: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

나) 학업과 무관한 연구/인턴 참여: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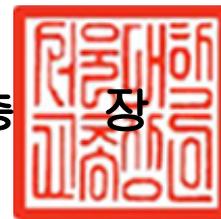
2) (소속대학 외 연구·인턴 활동) 대학 및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,

가) 학업과 연계된 연구/인턴 참여: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

나) 학업과 무관한 연구/인턴 참여: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

- 학업 연계 여부는 **학점 취득·졸업 연계, 졸업논문 작성 연계**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, 허가필요활동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여 활동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과 처분은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**면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시간제취업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** 끝.

서울대학교 총장



수신자 교육기구(학과(부)),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장

실무관 김정원

담당관 박현정

행정관 구민정

국제협력과장

2024. 6. 3.

전결

이정화

협조자

시행 국제협력과-4595 (2024.6.3.)

접수 ()

우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CJ인터내셔널센터 152동

/https://oia.snu.ac.kr/

전화 02-880-4447

전송

/kimgarden@snu.ac.kr

/ 비공개(1)